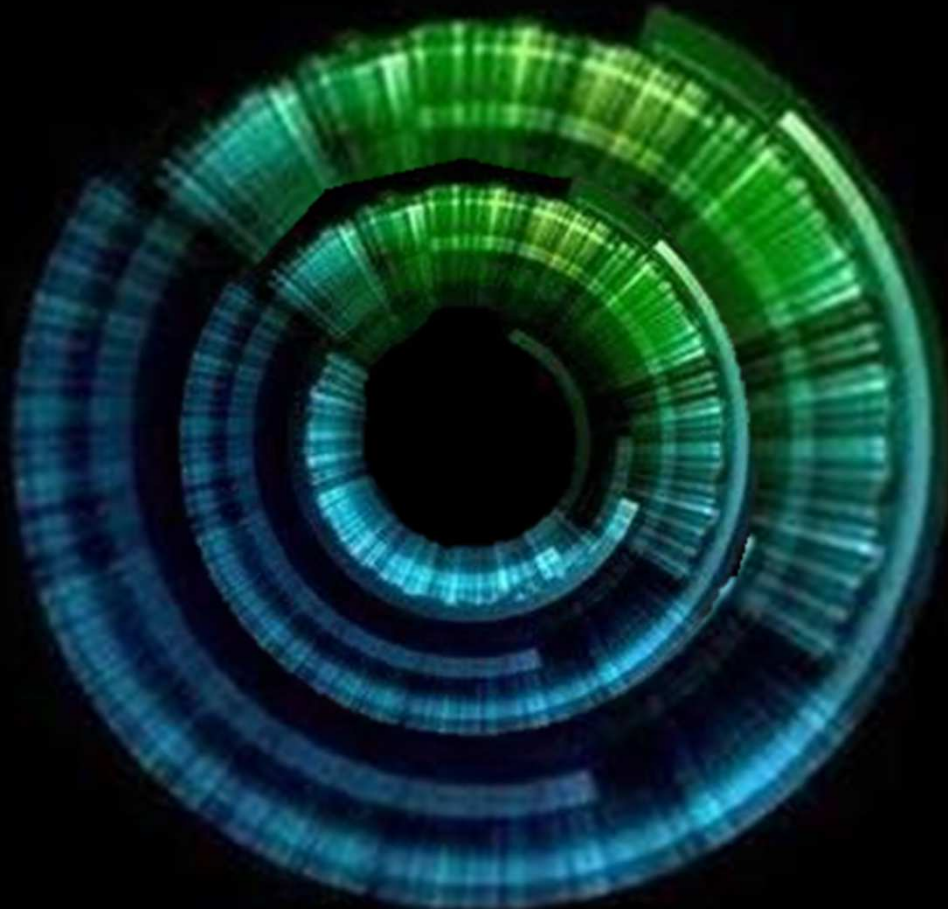


세무뉴스

2024년 제48/2024/QH15호 VAT법

2024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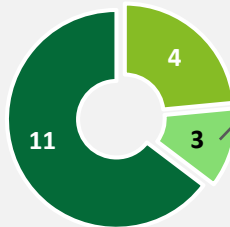
2024년 5월 발행된 저희 [세무뉴스](#)에서 소개한 VAT법("VAT") 개정안 초안에 이어, 제15대 국회의 제8차 회기에서 제48/2024/QH15호 VAT법이 2024년 11월 26일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초안 수정 과정을 거쳐 이룬 중요한 법적 진전으로,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VAT 관리 및 징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향후 기업 활동, 국가 재정 수입, 그리고 세무 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는 새롭게 개정된 VAT법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Deloitte의 상세 업데이트입니다.

일반정보



VAT법은 총 **4개 장과 18개 조항**으로 통과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없음
- 신규 사항
- 변경 사항



3개의 신규 조항

- » 제8조: VAT 확정 시점
- » 제13조: VAT 공제 및 환급 시 금지 행위
- » 제17조: 개인소득세법 규정의 수정 및 보완



시행 효력 (제18조)

신규 VAT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세 제외 대상인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수익 기준에 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7월 1일

주목할 만한 사항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VAT 규정 추가 (제4조 및 제9조)

베트남 내 상주 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VAT 10%를 적용한다.

2019년 세무관리법 및 7개 법률 개정안(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과 일치하도록 전자상거래 활동과 관련한 납세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규정한다:

- 베트남에 상주 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과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및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가 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가구 및 개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납부, 신고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 내용은 정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세무뉴스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ASIA-PACIFIC TAX
AWARDS 2024

주목할 만한 사항 (계속)

📍 매입 VAT 공제 조건의 수정 및 보완 (제14조)

최소 인보이스 금액에 따라 비현금 결제 증빙을 요구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며, 모든 구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 VAT 공제는 비현금 결제 증빙을 필수 조건으로 적용하되, 일부 특수한 경우는 정부 규정을 따른다.

매입 VAT 공제를 위한 필수 증빙 서류로 다음 항목이 추가된다: 패킹 리스트, 운송장, 화물 보험 증빙 (해당하는 경우).

📍 오류 발견 시 매입 VAT의 수정 신고 규정 명확화 (제14조)

신규 VAT법은 매입 VAT가 발생한 월 또는 분기에 신고하고 공제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한다:

매입 VAT 공제액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 또는 유관 기관이 세무 조사 또는 감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 오류 수정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납세자는 오류가 발생한 세무 기간에 수정 신고 및 공제를 수행한다.
- 납세자는 매입 VAT의 오류 또는 누락을 수정 신고할 때, 해당 수정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단순히 다음 과세 기간으로 이월되는 공제 가능한 VAT 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우, 오류를 발견한 과세 기간에 신고 및 공제를 수행한다.

📍 VAT 확정 시점의 수정 및 보완 (제8조)

VAT법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금 확정 시점을 법제화하고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 재화의 경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이나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시점으로 하며, 대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용역의 경우,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시점으로 하며, 대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경우, 세금 확정 시점은 정부의 세부 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 개인 및 가구 사업자의 VAT 면세 매출 기준 상향 (제5조 및 제17조)

연간 매출 2억 동 이하의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사업하는 개인 및 가구 사업자는 VAT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현행 개인소득세법에서 개인 및 가구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매출 기준도 이에 맞게 수정되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 (계속)

📍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VAT 세율 변경 (제5조 및 제9조)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VAT 면세 대상 추가:

- 가공되지 않은 생식품 또는 간단한 초가공만 거친 식품으로, 조직 및 개인이 직접 생산,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수입 단계에 있는 경우
- 관세 구역 내 기업에 금융 리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된 금융 리스 회사의 상품.
- 기타 재화:
 - ✓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방지를 위한 수입 후원물품
 - ✓ 국경 지역 주민의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거래 및 교환 상품

VAT 면세 대상에서 5% VAT 적용 대상으로 전환:

- 비료.
- 연안 및 국경 지역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한 선박,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 기계 및 장비
- 기업 및 협동조합이 구매한 농업, 축산, 양식 또는 수산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간단히 초가공된 후 다른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VAT 면세 대상에서 10% VAT 적용 대상으로 전환:

- 증권 예탁,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거래 센터의 시장 조직 서비스, 기타 증권 비즈니스 활동
-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공공 우편 및 통신 서비스, 대중 인터넷 서비스
- 동물원, 꽃밭, 공원, 가로수 관리 및 공공 조명 유지 서비스.

VAT 5%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가공된 소나무 수지.
- 가공되지 않은 산림 제품
- 설탕 및 설탕 생산 부산물(당밀, 사탕수수 찌꺼기, 폐당)
- 문화, 전시, 체육 및 스포츠 활동
- 영화 제작, 수입, 배급 및 상영.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세무뉴스는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주목할 만한 사항 (계속)

📍 VAT 납세 의무 확정을 위한 전문 법령 준거 강화 (제5조)

VAT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전문 분야 규정에 대한 여러 참조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법에 따른 증축 제품과 사료 및 재배법에 따른 식물 종묘 자재
- 신용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 제공 서비스
- 신용 기관법, 증권법 및 상법에 따른 파생상품
- 교육법 및 직업 교육법에 따른 교육 및 직업 훈련 활동
- 국방부장관 및公安부장관이 발행한 목록에 따른 국방·안보 제품과 국방·안보 산업을 위한 수입 제품 및 서비스(총리가 발행한 목록에 따름)
-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기
- 수출입세법에 따라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액 산정 시 참조되는 수입세 과세 기준가

📍 수정된 규정: 수출용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VAT 0% 적용 (제9조)

VAT 0%가 적용되는 수출 재화 및 서비스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 재화:** 베트남에서 외국에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판매되고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재화; 베트남 내수에서 비과세 구역 내 조직에 판매되고 비과세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
- **수출 서비스:** 외국에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고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비과세 구역 내 조직에 직접 제공되고 비과세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서비스.

VAT 0% 를 적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출국 절차를 완료한 개인(외국인 또는 베트남인)에게 격리 구역에서 판매된 재화.

현행 VAT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일부 규정을 법제화한다:

- 면세점에서 판매된 재화 및 기타 일부 수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VAT 0% 적용.
-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은 정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세무뉴스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주목할 만한 사항 (계속)

VAT 환급에 관한 규정 개정 (제15조)

VAT 세율 5%가 적용되는 상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VAT 환급 사례 추가:

- 만약 사업장이 오직 VAT 세율 5%가 적용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12개월 연속 또는 4개 분기 연속으로 아직 공제되지 않은 VAT가 300백만 동 이상일 경우,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사업장이 여러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VAT 환급에 관한 수출 활동 규정 개정:

- 수입된 후 다른 나라로 수출된 상품에 대해서는 VAT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출 활동과 국내 소비에 대한 VAT를 별도로 계상할 수 없는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VAT 매입액 배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의 총 VAT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에 따른다;
-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 매입액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이 이전 기간의 수출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면, 이를 다음 기간에 이월하여 다음 기간의 수출 활동에 대한 VAT 환급액을 계산한다

VAT 환급에 관한 투자 활동 규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VAT 환급 대상 투자 프로젝트에는 확장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단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VAT 환급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한이 추가된다;
-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단계 완료일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다. 완료일은 해당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하며, 시험 운전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 금융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원자재 처분에 의한 수익은 제외된다.

VAT 환급에 관한 규정에서 기업의 소유권 변경, 기업 전환, 합병, 통합, 분할, 해산, 파산(해산과 파산을 제외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다.

VAT 환급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을 추가한다: 판매자는 VAT 환급을 요청하는 사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규정에 따라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주목할 만한 사항 (계속)

VAT 공제 및 환급에서 금지된 행위의 합법화 (제13조)

VAT 공제 및 환급에서 금지된 행위의 합법화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매매와 관련된 행위, 불법 세금계산서/문서의 사용, 허위 거래의 생성, 사업 중단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규정에 따라 전송하지 않는 행위, 세금계산서 정보 시스템의 위조 또는 불법 접근, 세금 혜택을 위한 뇌물 제공이나 사기 행위, 그리고 세금 회피 또는 부당 취득을 목적으로 한 관계자 간의 공모.

딜로이트의 의견 및 권고사항

- 일반적으로, 새로운 VAT 법은 엄격한 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 및 사업 활동과 전문 법률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준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법 내용은 특히 수출업체와 국제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제안들로 인해 기업 커뮤니티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원칙을 정립하는 첫 단계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지침은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이를 면밀히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 새로운 VAT 법은 최근 논의되고 명확히 다뤄지고 있는 사항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 VAT율이 적용되는 수출 서비스의 조건으로 "수출 생산 활동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법에 따른 지침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침의 제정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포괄적일수록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업의 관점에서 새로운 VAT 법 조항의 변경에 따라 기업들은 **영향 평가와 세무 및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으로, VAT 규정 변경이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현금 흐름, 수익, 투자 결정,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영향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VAT 법 조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새로운 VAT 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 커뮤니티는 각 기업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비즈니스 및 세무 전략을 수립하고 법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Bui Tuan Minh
National Tax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Pham Thi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84 368 575 076
kyungryu@deloitte.com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